

●금융위원회고시제2015-43호

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23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자본,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, 금융위원회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요구 (안 제25조제1항, 제25조의2)

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,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.

나.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(안 제25조의3)

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수준, 부과 대상, 적립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음.

다. 자본규제 완화(안 제25조의4, 별표 3-5 신설)

금융위원회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은 2019년말까지는 바젤 I 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적용함.

라.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(안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)

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,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

3. 세부 개정 내용

□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고시·공고·훈령’을 참조*

*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→지식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·공고·훈령

●외교부고시제2015-873호

2015년 12월 16일 울란바타르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Bayarbaatar BOLO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, 2015년 12월 16일자로 발효된 “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(2011~2015년)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”를 이에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23일

외 교 부 장 관

(한글번역문)

(한국측 제안각서)

울란바타르, 2015년 12월 16일

각하,

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(2011~2015년)에 관한 기본약정 (이하 “약정”이라 한다)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,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,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‘가’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